# 울산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(변경) 모집 공고

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, 「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(변경)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5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1. 위탁대상 : 2개소(변경)

구분	어린이집명	위치	규모(m²)	정원	비고
변경	푸른숲어린이집	동대10길 8 (호계동)	222m²	47명	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(임차만료일 : '29.2.28.)
	효문어린이집	송도길 84 (효문동)	234m²	35명	효문폐교 무상사용

# 2. 위탁기간 : 위·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

- ※ 푸른숲어린이집은 국공립 전환(장기임차)어린이집으로 중도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음
- ※ 효문어린이집은 효문폐교 사용여부 등 운영여건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음

## 3. 공고 및 접수

- 가. 공고기간 : 2022. 1. 5.(수) ~ 1. 24.(월) (20일간)
- 나. 서류접수 : 2022. 1. 18.(화) ~ 1. 24.(월) 09:00~18:00 (토,일 접수 불가)
- 다. 접수장소 : 북구청 가족정책과(4층) 보육담당
- 라. 접수방법 :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직접 방문접수(우편, 인터넷, 대리접수 불가) ※ 법인, 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신분증 지참
- 마. 제출서류 : 위탁신청서 및 첨부서류(원본1부, 사본 15부)

### [붙임2] 제출서류 목록, [붙임3] 위탁신청서 및 첨부서류

- 신청자가 위탁 희망어린이집 1개소를 선택하여 운영계획서 및 예 산서 작성
-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A4 규격, 양면 제본하여 제출

- ※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삭제처리(미삭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)
- 양면 100쪽(50장)이내 작성 준수(증빙서류 포함)
- 목차(심사항목 순서로 쪽수 기재) 및 쪽수 표기(수기 가능)
- 항목 순서에 따라 색지를 간지 또는 라벨 표시하여 구분
- 원본으로 제출하되, 원본첨부 불가 시 사본첨부(접수 시, 원본 제시해야 함)
  - ※ 공시지가확인원, 등기부등본 등 즉시 발급 서류 원본 첨부
  - ※ 자격증 등 원본첨부 불가 서류는 사본 첨부(서류접수 시 원본 지참)
  - ※ 주민등록등본 원본 별도 제출
  - ※ 기준일자 : 공고일(1. 5) 기준, 단 재산(동산, 부동산)은 공고일 전일기준 제출서류 발급일 : 공고일 이후
- 상기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고, ppt자료는 면접 심사 발표일 3일전까지 USB로 제출, 의문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작성(심사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서류첨부 불가)
- 단독신청, 미접수 시 재공고(7일간) 실시, 1회 재공고에도 단독 접수인 경우 적격여부(서류 및 면접) 심사

### 4. 사전설명회

가. 일 시 : 2022. 1. 12.(수) 16:00

나. 장 소 : 북구청(장소는 접수 시, 안내)

다. 참석대상 : 사전신청자

라. 신청방법 : 2022. 1. 11.(화) 18:00한 유선접수(241-7681~3)

[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
마. 주요내용 : 위탁대상시설 현황, 위탁신청서류 관련 설명

※ 사전신청자 없을 시 취소

### 5. 위탁운영 신청자격

- 가.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,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(어린이집 운영 능력)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·단체
- 나.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제21조 [별표 1]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
- 다.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

#### << 신청 제외대상 >>

- ■「영유아보육법」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■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
-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
- ■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
-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### 6. 위탁운영조건

- 가. 위탁범위 :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
- 나. 운영재원 : 정부지원금 및 보육료 수입, 자부담 전입금 등
- 다.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(국고보조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액 외의 전액을 수 탁자가 부담)
- 라. 「영유아보육법」제26조 취약보육(영아. 장애아. 그밖의 연장형. 다문화아동) 중 2개이상을 실시하여야 함(장애아, 그밖의 연장형 권장)
- 마.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.
- 바. 위탁운영자(개인)로 선정된 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원장으로 재 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체결일 전일까지 반드시 제3자에게 양도하 고 원장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겸직 금지. 또한 위탁기간 동안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 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함
- 사. 영유아보육 관련법령,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,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조례, 위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. 취소된 위탁체는 향후 5년이내 재신청 불가
- 아.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"어린이집 위탁계약서"에 따르며, 그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구 의견에 따라 결정함
- 자. 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·인척 원장 임용금지 및 대표자·관계자·원장의 친·인척은 종사자로 임용 금지하며 개인의 경우원장의 친·인척은 종사자 임용 금지함
  - ※친·인척 :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
- 차. 위탁운영자는 기존 보육교직원(종사자)에 대하여 전원 고용 승계하여야 하며, 기 실시하고 있는 취약보육(시간연장)을 실시하여야 함

### 7.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

가. 심사기준 : 위탁체의 공신력, 시설 운영실적, 위탁체.원장(내정자)의 전문성, 어린이집 운영계획, 재정능력[붙임4]

#### 나. 선정방법

- 1차(서류심사) : 결격 사유 등 신청자격 적합 여부 확인 2차(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사) : 발표 및 질의응답(ppt 자료 활용 5분 이내 발표)
-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과,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, 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일 시 최고 득점을 받은 순위에 의하며,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북구청장이 최종 선정하고,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
- 최종 심사결과가 동점인 경우,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, 위탁체. 원장(내정자) 원장 전문성,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
- 8.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: 2022. 2월 초(예정)
- 9. 최종결과 발표 :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지

## 10. 기타사항

- 가. 신청서 접수 후에는 열람.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나.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- 다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.취소함
- 라.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
- 마. 제출서류 중 원본지참 서류는 원본 미지참시 사본서류를 인정하지 않음
- 바.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 자와 계약할 수 있음
- 사.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선정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자와 계 약할 수 있음

- 아. 위탁 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선정된 운영체는 선정일로부터 개원일(위탁 시작일)까지 무보수로 개원 및 인수인계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 여야 함
- 자. 신청자는 심의일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사업 소견을 발표하고,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하며, 불참시 위탁의사가 없는 것을 간주함 (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체 대표와 원장 내정자의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함)
- 차.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수탁운영 원장(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기재된 원장)이 해야 하며, 향후 1년간 변경 금지
- 카.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북구(가족정책과)의 유권 해석을 따름

# 11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가족정책과 보육담당(052-241-7681~3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평면도면.

- 2. 제출서류 목록
- 3. 위탁신청서 및 첨부서류
- 4.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기준표. 끝.